與 "근거없는 위기론" vs 野 "안일한 현실인식"

3자회동 이후 경제상황 진단·해법 장외 신경전

文 "정부 정책 실패" 金 "경기호전…폄훼말라"

청와대와 여야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전날 청와대 3자회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현 경제상황 진단과 해법을 놓고는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장외 연장전을 벌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안이했다며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수석실 명의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2년 연속 경제상승률 상승 ▲지난해 고용 12년 만에 최고치 기록 ▲주택거래량, 코스닥시장 각각 2006년,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등을 근거로 "지속적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문재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총체적 위기"라고 비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총체적 위기이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성과를 폄훼하는 과한 언어나 표현은 달리는 말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회동에 대해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던 자리였다"고 가세했다.

주 최고위원은 담뱃갑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래서는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경제살리기는 결코 할 수 없다"면서 "오직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위민정치로 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후 문 대표는 창원 반송초등학교 급식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청와대에서 통계자료 수치만 내놓으면서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우긴다면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국민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은 것"이라며 "그런 불통이 아쉽다"고 재반박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외연 넓히기' 나서

野 비판 뉴라이트 출신 학자 초청 '한반도 미래…' 특강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18일 야당을 비판해 온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초청해 특강을 여는 등 외연 넓히기에 나섰다.

이날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초청됐다.

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 대표 등을 지낸 이 위원은 2013년 당시 민주당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 됐다고 지적하자 이를 '학문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에 참여하는 등 야권에 쓴 소리를 해왔다.

이 위원은 특강에서 셰일 가스 개발 기술을 확보한 미국이 석유를 자급한다면 안정적인 석유 수입로를 지켜 온 미국 해군의 활동이 축소되는 등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에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진(共進, 여러 종이 상호 관계해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개념) 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당 지도부 워크숍에서 '공진국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포용적 성장을 당의 경제정책 기조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전경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해 대기업 부설 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의 특강을 예고하는 등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벽보고 얘기한 것 같다" 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충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찾아 격론을 벌였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민생 문제에 있어 여당 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통합의지'를 담아 일정을 기획했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보니 이날 회동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흘렀다.

면담 내내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은채 신경전이 거칠어졌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동이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며 "또 의무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이들은 회담을 마치고 도청을 떠나면서도 문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고 하자 홍 지사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고, 문 대표가 "소득이 (없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하자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계속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홍 지사를 비판하며 문 대표를 지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 지사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의무급식을 홍 지사가 대권 관심병으로 악용하는 것은 유치한 정략"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아이들 '밥'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에 대해 논의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박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 인식 유감"

박, 靑 회동서 "5·18기념곡 지정 둘러싼 국론분열 야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인식에 크게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다'고 말했는데, 이런 인식이 5·18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기념곡을 함께 부르게 해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는 행사 기념곡 제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5·18 관련한 노래 문제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다. 국가보훈처와 잘 논의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념곡으로 지정은 않지만 제가 참석해서 제일 큰소리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의 말씀은 국가지도자로서 국론 통합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해 안타깝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온 보훈처와 다시 상의하라니 무성의한 말씀이다"고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

박주선, EBS 광주지역 입시정보 설명회 유치

21일 조선대 해오름관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사진〉 의원은 18일 2015 EBS 광주지역 입시정보 설명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경석·신삼수·허준석씨 등 EBS 대표강사가 2016 수능대비 학습전략, 대입 일정별 대응 전략, 수능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EBS 활용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강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과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이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EBS 입시전략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교사·학부모는 오후 1시 30분까지 설명회 장소로 입실하면 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고 제 2015 - 3호

'15년 매립지등 간척농지 임대공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지구 매립지등 간척농지에 대한 임대사업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매립지등

임대구역별	공구	토지소재지 (해당매립지)	구획수	필지수	면적(㎡)	비 고
총 계			28	3,193	30,076,625.8	
피해농업법인 임대구역	소 계		18	2,681	25,300,369.9	· 일반농업법인 임대신청 불가구역
	영암유휴지	영암군 삼호읍	3	251	2,034,339.0	
	마산1	해남군 마산면	3	653	6,070,374.3	
	마산2	해남군 계곡면	1	263	2,590,982.0	
		영암군 미암면	1	70	668,999.6	
	산이2-2	해남군 산이면	2	528	5,068,707.6	
	금호1-1	해남군 산이면	2	477	4,672,305.6	
	화원1	해남군 화원면	3	285	2,767,417.3	
		해남군 문내면	3	154	1,427,244.5	
일반농업법인 임대구역	소 계		10	512	4,776,255.9	· 피해농업법인 임대신청 불가구역
	영암유휴지	영암군 삼호읍	1	28	235,583.0	
	마산1	해남군 마산면	1	162	1,522,803.8	
	마산2	해남군 계곡면	1	58	544,588.0	
		영암군 미암면	2	68	628,022.7	
	산이2-2	해남군 산이면	–	–	–	
	금호1-1	해남군 산이면	2	60	529,983.9	
	화원1	해남군 화원면	1	85	853,419.2	
		해남군 문내면	2	51	461,855.3	

※ 임대구획별 토지조서, 도면은 본 공고일 이후부터 임차신청장소(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및 토지소재지 읍·면에서 열람가능

2. 임대신청자격

가. 피해농업법인 임대구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제5호에 따라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피해농업법인"이라 한다.)"으로서 2015년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일(2015. 2. 5.) 이전에 설립되고, 임차신청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이여야 합니다.

○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여야 합니다.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이여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모두 농업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서 징구 : 간척지 이용 경작확인서 또는 쌀 또는 밭소득등 보조금지불금확인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이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구역 시·군·구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어 보상금을 수령한 농어업인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총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이여야 합니다.

○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사업 지역 시·군·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상속은 배우자만 인정합니다.

○ 피해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피해농업회사법인의 구성원 중 농업인은 피해농가 1세대당 1인만 인정 합니다

나. 일반농업법인 임대구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하 "일반농업법인"이라 한다.)"으로서 2015년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일(2015. 2. 5.) 이전에 설립되고, 임차신청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여야 합니다.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이여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모두 농업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서 징구 : 간척지 이용 경작확인서 또는 쌀 또는 밭소득등 보조금지불금확인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이여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농업회사법인의 구성원 중 농업인은 농가 1세대당 1인만 인정 합니다.

3. 임대신청방법

가. 해당 간척농지 근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해당 군 내에 있는 어느 간척농지든지 신청가능 하되, 간척농지 읍·면지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읍·면지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간척농지 읍·면지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합니다.

나. 구획 면적규모별 법인규모(조합원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농업법인 임대구역

면적규모 (ha)	200ha 이상	200ha미만~150ha이상	150ha미만~100ha이상	100ha미만~50ha이상	50ha미만~30ha이상	30ha미만~20ha이상
법인조합원수 (인)	173인 이상	130인이상	86인이상	43인이상	26인이상	5인이상

☞ 일반농업법인 임대구역

면적규모 (ha)	200ha미만~150ha이상	150ha미만~100ha이상	100ha미만~50ha이상	50ha미만~30ha이상	30ha미만~20ha이상
법인조합원수 (인)	80인이상	53인이상	26인이상	16인이상	5인이상

다. 임대신청 자격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임대구역별(피해농업법인, 일반농업법인)로 "나"항의 기준에 의거 희망하는 구획 면적규모에 대한 법인규모(조합원수)를 갖추어 해당 구획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법인 대표자는 신청기한 만료일시까지 공고로서 요구한 신청서류 및 자격을 구비하고 1개 구획만 선택하여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 후 임차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임차신청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해당지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구성원 중 2개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중복 가입하여 임차 신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1세대당 1개의 법인만 선택하여 임차신청 하여야 하며, 중복가입 구성원의 배제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임대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임차신청의 배제 또는 임대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대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법인선택결정을 하지 않은 피해농어업인이 다수의 법인구성원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임대신청 이후 발견될 경우, 중복가입자는 임대자격심사에 한하여 어느 법인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법인 대표자는 해당법인 구성원 전체의 각서 및 법인선택결정서를 징구하여 임차신청 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피해농업법인, 일반농업법인 모두 해당)

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목적사업에 농업생산이 포함되지 않은 법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피해농업인법인 및 일반농업법인 모두 1구획만 신청가능하며, 이미 임차자로 선정되어 계약이행중인 법인 및 조합원은 추가로 임대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서류 : 피해농업법인 (가 ~ 차 호의 서류), 일반농업법인 (가 ~ 자 호의 서류)

가.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1통[공사 소정양식, 임차신청 장소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나. 법인등기부등본 1통, 다. 법인인감증명서 1통
라. 법인 정관(공증된 조합원명부 포함) 및 출자 회의록 사본(원본제시) 각1통
마. 출자금 확인 증빙서류(※당해법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제출)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 ㉮ 법인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필지별 1통)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각1통
•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1부
•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 ㉮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출력물 또는 출자자산명세표 1부
㉯ 출자한 농기계의 면세유류 관리대장(농협발급)
바. 법인 농업인 확인 서류 : 쌀 또는 밭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확인서, 간척지 이용 경작확인 신청서 [영농사실 인근주민(3명)확인서 첨부]
사. 법인 증복가입 배제 각서 및 법인선택결정서 1부[공사 소정양식, 임차신청 장소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아.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지참, 자. 법인인감도장
차. 피해농어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영산강3지구 피해농어업인은 입증서류 제외(영산강사업단에서 확인)
• 영산강2지구 영암유휴지 임대신청 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피해농어업인 확인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 피해농어업인 중 배우자가 법인의 구성원으로 기입한 자는 피해농어업인의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출자금(자본금)의 평가 및 인정기준(아래의 출자금을 합산하여 평가)

가.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시지가로 환산한 농지가격(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나.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상 잔고금액을 적용합니다.

다.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에 등재된 출력물과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산명세표에 의하되, 해당 농기계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잔존가액을 출자금으로 인정합니다.

〈잔존가액 산정방법 : 취득가액 -[취득가액×경과년수×연간상각율(1/6)]〉

6. 신청기간 : 2015년3월19일~2015년4월2일(평일 09:00시 부터 18:00시 까지)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임차신청 접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7. 임차자 선정방법

가. 일반농업법인 임대구간은 위 제3항 나호의 구획 면적규모별 법인규모(조합원수) 기준 중 "일반농업법인 임대구역 기준"에 따라 신청된 법인을 대상으로 임차자를 결정(같은 구획에 신청법인이 2개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로 통보계획)

나. 피해농업법인 임대구간은 위 제3항 나호의 구획 면적규모별 법인규모(조합원수)의 "피해농업법인 임대구역 기준"에 따라 임대신청 법인이 임대신청 기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구획의 신청법인 중 조합원 수가 많은 법인부터 결정합니다.

다. 임차자는 구획별로 선정합니다.

8. 임대차료 산정 : 쌀수확량(kg)×kg당 쌀가격×임대료율(%)×임대면적(㎡)÷1,000

가. 임대차료는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다만,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정한 임대차료 산정기준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름)

○ 쌀수확량 : 간척토지소재지 해당군의 전년도까지 최근 5개년간 쌀수확량 중 최고 및 최저수확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10a당 평균 수확량

○ kg당 쌀가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써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 가격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수확기 평균 쌀가격

○ 작물별 임대료율(%) : 아래의 연차별 임대료율을 적용

구 분	연차별 요율 (%)				
	1년	2년	3년	4년	5년
수도작	12.7	15.6	16.6	17.3	18.0
수도작외	5.1	6.2	6.6	6.9	7.2

나.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수도작재배 시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료 요율을 수도작이외 요율로 적용하여 부과 합니다.

9. 임대차 계약체결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임대(계약)기간

○ 수도작재배 신청법인 : 3년이내 ○ 파작물 및 사료작물 재배 신청법인 : 5년이내

다. 재권 확보 : 「매립지등관리·처분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매립지등임대관리지침」에 따름

10. 유의사항

가. 구획별 간척농지 임대대상 필지 및 위치도면은 임차신청 접수장소(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및 간척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도 토지조서 열람이 가능하니 임차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법인 증복가입 배제각서 및 법인선택 결정서를 임차신청 접수장소 또는 간척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에 수령 후 작성하여 임차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임차신청서, 각서 및 법인선택결정서의 내용 기록 잘못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신청법인에게 있습니다.

다. 피해농어업인들로 구성된 법인이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계약 기간중 경작권을 무단 전대 또는 양도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법인에 소속된 피해농어업인 전체에 대하여 향후 피해농어업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임차신청기간 종료 후 경합된 구획은 신청 임차법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추첨하며, 최종 임차인으로 선정된 법인을 확정하여 통지합니다.

마. 임차농지의 무단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경작권 양도 등 임대계약서에서 정하는 위약금 납부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소속 구성원이 가입한 다른 법인 포함)은 금회 및 향후 임대대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임차법인은 법인 운영상황, 영농일지, 회의록 등의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에서 정하는 경영진단팀 업체의 방문 및 자료요구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임차법인은 계약시에서 정하는 자료 등 공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매립지등 임대관리지침」등에 의합니다.

자. 임대차료 감액 및 감면신청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수확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270-6442, 6446, 64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